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력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등 〉

■ 황 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11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요지	3
2. 검토의견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황 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8. 12.
3. 회 부 일: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력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체력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은 ‘체력인증’ 등을 정의하고,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이 체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력인증”이란 개인의 체력요소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운동처방”이란 체력의 향상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체력수준,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동의 종류와 실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꾸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성·연령별 체력수준을 고려할 것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 향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민체력 향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체력 향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국민체력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국민체력 향상 지원방안
5. 국민체력 향상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국민체력위원회) ①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체력인증 및 운동처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력인증 기준은 연령 및 성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하여 운동처방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체력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력인증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이하 “체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기관에 대하여 체력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력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체력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체력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체력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체력인증자료의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력인증을 통하여 얻은 체력인증자료(이하 “체력인증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체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국민체력 측정항목 및 측정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3. 국민체력 관리 및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국민체력 향상 사업

5. 국민체력 관련 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체력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력인증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체력인증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력 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체력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3호를 삭제한다.

2. 검토의견

국민의 체력수준은 감소하는데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과학적·체계적인 체력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체력운동’ 및 ‘운동처방’을 정의하고,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체력인증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기대수명 연장 및 생애주기별 체력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입법목적이나 개별 조문 내용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 등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별도 법률로의 제정실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제정안 관련 현행 추진 현황

제정안 주요 내용	현행 추진 현황
안 제5조(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민체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현행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스포츠진흥 기본 계획」에 내용 포함 * 「생활체육진흥법」 상 ‘생활체육 진흥’ 관련 내용도 「스포츠진흥 기본 계획」에 포함
안 제6조(국민체력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둠	현행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둠
안 제7조(체력인증 및 운동처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활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하여 운동처방을 할 수 있음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체력 100 제도 운영 - 사업 인증센터 76개소 운영 - 운동처방사 배치,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
안 제8조(체력인증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여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체력인증기관에 대하여 체력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을 실시함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민생활체육조사 실시 - 성별·연령별 체력인증 기준 관련 연구 실시 - 국민체력 100 홍보사업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
안 제10조(체력인증자료의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체력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음	- 국민체력측정통계 조사 - 체력인증서 발급서비스 제공

안 제5조·제6조와 관련하여, 문체부장관은 현재 「스포츠기본법」 제8조·제9조¹⁾에 따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생애주기별 국민체력 증진 대책 등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중 국민체력 관련 주요 내용

[전략1] 스포츠로 국민건강· 자아실현 제고	①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1. 운동 참여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스포츠 유인 □ 전 국민 운동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체력인증 및 체력증진교실 활성화) 체력인증센터 확대('23년 75개소→'28년 126개소) 및 민간체육시설 활용한 간소화된 체력측정 서비스제공(측정항목 6개→2개), 건강검진과 연계한 체력증진교실 운영
---	---

1) 「스포츠기본법」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7. 스포츠 시설의 조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전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등급 세분화(3→6등급) 및 민간 보험사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확대* 등 체력인증 참여 유인 제공
 - * 現우체국 건강보험 → 참여 보험사 확대 추진
- 건강검진 결과 대사질환 전 단계 국민들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교실 참여 확대(보건복지부 협업)
-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의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정보를 직접 통합 관리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가칭)‘마이 스포츠데이터’) 구축
- 축적된 데이터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 등 타 시스템과 연계(행정안전부 협업)

□ 운동하는 국민 대상 인센티브 확대

- (포인트 지급) 국민 체육 참여 실적을 토대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연 5만원 한도 포인트 지급('23년 1만명 → '28년 50만명)
- (적립) 체력인증 및 스포츠클럽 활동, 체육시설 이용 실적 등 실제 체육활동 참여 시 스포츠 포인트 적립
 - * (예) 체력인증센터 측정 5,000p, 스포츠클럽 운동교실 10회 참여 10,000p 등
- (이용)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클럽 회비 납부, 체육용품 구매
 - * 적립된 포인트를 만원 단위로 체로페이와 연계한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
- (확대) 보험료 납부 등 건강 관련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처 확대 추진

2.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청년·중장년이 즐기는 스포츠

- (직장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 기업의 수요맞춤형 스포츠 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파견 운영*
 - * '23년 268개 기업 등, 체력측정
 - '28년 600개 기업 등, 체력측정 및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로 건강한 시니어 ○ (건강 맞춤형 체력관리)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노년층 대상 건강진단-운동처방-운동참여 연계로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지원 - 질병 및 체력부족 등으로 활동성이 낮은 노년층 대상 특화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
[전략3]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⑧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1. 학교스포츠 활성화 □ 정규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 (학생 체력관리 체계화) 국민체력100 출장전담반을 통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제공 등을 통해 학생 체력관리 지원 체계화, 장기적으로 PAPS와 국민체력100과 통합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서비스 구축

안 제7조~제10조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현재 국민체력 100 사업을 통해 체력인증센터 운영,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체력측정·운동처방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매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국민체력측정통계」(국가승인통계) 발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표] 국민체력 100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참여 저변 확대																																																
사업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사업예산	'24년 기준 155억(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	만 11세 이상 모든 국민																																																
사업내용	전국 76개소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측정·인증(생애주기별 6~7개 체력항목 측정), 체력증진교실 운영																																																
사업연혁	▪ (2010) 체력인증기준 및 프로그램개발(19세~64세), ▪ (2011) 성인대상 체력인증사업 시범실시, ▪ (2012) 체력인증센터 14개소 운영 ▪ (2014) 「국민체육진흥법」 상 법적 근거 마련, ▪ (2019) 대상 연령확대(11세 이상으로) ▪ (2021) 체력인증센터 76개소 운영, 유아기(4~6세) 체력인증기준 마련 ▪ (2023) 민간체육시설 협업 확대(10→130개소) ▪ (2024) 체력인증센터 76개소 운영 중(단위: 개소) <table><tr><td>서울</td><td>인천</td><td>경기</td><td>강원</td><td>충남</td><td>세종</td><td>충북</td><td>대전</td><td>제주</td></tr><tr><td>8</td><td>2</td><td>12</td><td>6</td><td>3</td><td>1</td><td>6</td><td>1</td><td>1</td></tr><tr><td>광주</td><td>전북</td><td>전남</td><td>대구</td><td>울산</td><td>경북</td><td>경남</td><td>부산</td><td>총계</td></tr><tr><td>5</td><td>5</td><td>7</td><td>2</td><td>1</td><td>6</td><td>4</td><td>6</td><td>76</td></tr></table>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전	제주	8	2	12	6	3	1	6	1	1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총계	5	5	7	2	1	6	4	6	76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전	제주																																									
8	2	12	6	3	1	6	1	1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총계																																									
5	5	7	2	1	6	4	6	76																																									
체력측정 방법	▪ 체력측정요소 <table><tr><th rowspan="2">연령</th><th rowspan="2">신체 조성</th><th colspan="8">체력</th></tr><tr><th colspan="4">건강체력</th><th colspan="4">운동체력</th></tr><tr><td>유소년 (11~12)</td><td>신체질량지수, 신장비</td><td rowspan="3">근력</td><td rowspan="4">근 지구력</td><td rowspan="3">심폐 지구력</td><td rowspan="3">유연성</td><td rowspan="3">민첩성</td><td rowspan="3">순발력</td><td>협응력</td><td rowspan="3">-</td></tr><tr><td>청소년 (13~18)</td><td rowspan="2">체 질량지수, 체지방률</td><td colspan="7" rowspan="2"></td></tr><tr><td>성인 (19~64)</td></tr><tr><td>어르신 (65~)</td><td></td><td colspan="2">근기능 (상지,하지)</td><td></td><td></td><td>-</td><td>-</td><td>협응력</td><td>평형성</td></tr></table>	연령	신체 조성	체력								건강체력				운동체력				유소년 (11~12)	신체질량지수, 신장비	근력	근 지구력	심폐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	청소년 (13~18)	체 질량지수, 체지방률								성인 (19~64)	어르신 (65~)		근기능 (상지,하지)				-	-	협응력	평형성
연령	신체 조성			체력																																													
		건강체력				운동체력																																											
유소년 (11~12)	신체질량지수, 신장비	근력	근 지구력	심폐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																																								
청소년 (13~18)	체 질량지수, 체지방률																																																
성인 (19~64)																																																	
어르신 (65~)		근기능 (상지,하지)				-	-	협응력	평형성																																								

구분	주요 내용								
	▪ 측정장비: 측정항목별 측정결과가 국민체력100 관리 서버에 실시간 자동 전송 관리되는 기능을 탑재한 12종의 체력측정 장비 전센터 보유 ▪ 출장전담반: 센터 미개소지역·단체·도서벽지·취약계층 등에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을 전담하는 6개반을 공단이 거점별로 별도 운영 - 송파(2개/서울·경기·인천권), 아산(1개/충청권), 대구(2개/경상권), 광주(1개/전라권) - 출장반당 건강운동관리사(6명), 체력측장비(11종), 차량2대(카니발, 장비이동) ▪ 상담인력: 「국민체육진흥법」상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센터별 최소 2인 이상 배치 의무화 하여 측정·상담진행								
체력측정 결과 활용	▪ (체력인증) 개인별 체력평가지 및 운동처방지 출력 및 운동상담 - 체력상위자: 체력수준별 문체부 장관 명의 1·2·3등급 체력인증서 발급 - 체력인증(1~3등급) 이외의 사람은 참가증 발급(진흥공단 이사장 명의) ▪ ('건강체력 권고기준' 활용) '건강체력 권고기준'을 마련, 측정결과 '건강체력' 결과에 대하여는 '체력저하', '개선필요', '건강체력' 진단·처방								
체력증진 교실	▪ 참여대상: 일반국민, 단, 저체력자·과체중·비만자 우선선발 ▪ 운영강사: 건강운동관리사(체력측정사 보조가능) ▪ 프로그램: 생애주기별·체력요인별 체력향상 목적 유·무산소 실내운동 ▪ 운영방식: 대면·비대면, 무료운영 * 비대면 수업은 쌍방향 통신 플랫폼(구글미트 등) 사용 <table><tr><th>기 간</th><th>빈 도</th><th>시 간</th><th>참여인원</th></tr><tr><td>1일~12주</td><td>주 1회 이상</td><td>30분 이상(1회)</td><td>대면: 50명 이하(1회)/ 비대면: 200명 이하(1회)</td></tr></table>	기 간	빈 도	시 간	참여인원	1일~12주	주 1회 이상	30분 이상(1회)	대면: 50명 이하(1회)/ 비대면: 200명 이하(1회)
기 간	빈 도	시 간	참여인원						
1일~12주	주 1회 이상	30분 이상(1회)	대면: 50명 이하(1회)/ 비대면: 200명 이하(1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운동하는 국민에게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사업예산	'24년 기준 6억 9,500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	만 11세 이상 모든 국민
사업내용	적립시설로 등록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활동을 인증하여 받은 스포츠상품권을 스포츠시설 및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연혁	▪ (2023)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시행 ▪ (2024) 1만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시행 중 ▪ (2025) 본사업 추진 예정
지원방식	1 [시설] 인센티브 적립시설 등록  2 [국민] 등록시설 방문→ 스포츠활동 QR코드 인증  3 [KSPO] 인센티브 부여  4 [인센티브 전환]  5 [인센티브 사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제정안 내용이 기존 법률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고 현재 문체부가 시행 중인 사업들이 상당한바²⁾, 개별 법률의 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행정안전부는, 안 제6조의 ‘국민체육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보다는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거나 문체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현행 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 법령에 추가하는 방안과 개정안의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국민체력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체력인증센터 및 협업 민간체육시설

- 체력인증 지원을 위해 민간체육시설과 협업 중

구분	인증센터	협업 민간체육시설
개소수	전국 76개소 (공단 직영 4개소, 지자체운영 72개소)	전국 132개소 협력센터 (공공·민간 헬스장 등)
지도사	· 운동처방사(건강운동관리사) 182명 · 체력측정사(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10명	· 체육전공자 권장
측정 분야	· (건강체력) 신체조성,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 (운동체력)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평형성, 협응력	· 심폐지구력, 근력, 협응력
기기	· 체지방측정기, 악력측정기 등 12종 장비	· 악력측정기, 스텝박스 또는 트레드밀, 의자, 고깔
차이점	· 인증서 발급 O, 운동 처방 O	· 인증서 발급 X, 운동 처방 X → 인증센터 방문 안내

[참고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현황

□ 목적 : 국가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협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근거 : 「스포츠기본법」 제9조('21.8.10. 제정, '22.2.11. 시행)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23.1.25. 시행)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5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민간위원(당연직 3인**+위촉직 6인***) (시행령 제3조)

* 문체부(간사), 기재·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이에리사 휴먼스포츠대표(공동위원장),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중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기한 서울대 교수, 허구연 KBO총재, 김석규 동국대 교수

○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부처·민간 전문가 등 참석 가능하며, 안전 협의
등을 위해 차관조정회의(의장: 문체부 2차관) 운영 가능

□ 기능 및 역할

○ 스포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점검

○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 수립·조정 등

□ 회의 개최내역

-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3. 12. 2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4)
개최장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현황 및 대회시설 설치·이용계획 등(3건)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